

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6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함.
- “전염병 예방법” 개정에 따라 나병을 한센병으로 변경함.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한 “종합토지세”를 “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”으로 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함.
-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 보완 및 전염병명 “나병”을 “한센병”으로 명칭변경과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,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 등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 및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지방세제

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